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105
----------	-----

제출년월일 : 2015. 10.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평창군 지질공원의 지정·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생태계와 자연 및 문화경관 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2.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그간의 추진상황[참고]

가. 지질공원 조례 제정 근거 : 자연공원법 제2조, 표준안 적용

나. 추진경위

- 2013년, 백두대간 광역행정협의회(평창, 영월, 정선, 태백시)의 사업 제안으로 정선군을 의장으로 4개 시군에 분포한 고생대 지질 유산을 활용,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사업 추진.

다. 사업기간 : 2013년 ~ 2015년(3년)

라.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900, 시군비 100)

마. 추진현황

- 지질공원 타당성 조사 용역
- 지질공원 신청서 작성 용역(원가계산용역 포함)

- 지질생태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용역
- B.I 개발 디자인 용역

바. 백두대간 지질관광자원 현황

- 평창군 : 백룡동굴, 고마루(카르스트 지형)
- 영월군 : 한반도지형 등 8개소
- 정선군 : 화암약수 등 5개소
- 태백시 : 검룡소 등 4개

사. 우리나라 지질공원 현황

- 제주도, 울릉군, 부산시, 강원도(강원평화지역), 청송군, 전남(무등산권)
- * 세계지질공원 : 제주도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나.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안 제4조)

-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다. 지질공원 해설사 운용 (안 제5조)

라. 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안 제6조)

다. 지질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안 제8조 및 안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2조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5.8.18~9.7) 결과 : 제출의견 있음

- 위원구성에 지질공원 관련 해설사 추가(반영 완료)

2)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영완료)

- 안 제4조에서 군민의 책무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에 근거없는 의무 조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재검토 요망.

- 안 제6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6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환경부장관이 해설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격을 부여할 권한이 없는 우리군에서 교육과정을 준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 안 제20조가 지질공원의 관리 위탁을 위한 예산의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민간위탁에 관한 일반 조례인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함.

평창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2장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제4조(보전·활용·관리 종합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평창군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용)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안내·해설과 교육·홍보를 위해 지질공원 해설사를 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질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지질공원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 운영기관이 탐방객 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지질공원위원회

제8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평창군지질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하고 여성 위원을 40% 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부군수와 담당 실·과·단장은 당연직이 된다.

1. 지질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2. 관광분야 전문가
3. 평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지질공원 해설사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7조(전담기구 설치·운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
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
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등

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8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